

2009. 04. 16(목) 10:00



158회 거창군의회(임시회)
제 2 차 본 회 의

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
일부개정규칙안

제 안 설 명 서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번호	제12호
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04. 02.

제 출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, 타당성 등의 심사강화를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비율 확대함(안 제5조)

○ 민간인 심사위원을 3분의 1 → 과반수로 조정

나.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함(안 제7조)

○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 찬성을 과반수 → 3분의 2 로 조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166조, 행정안전부 권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

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

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3분의 1” 을 “과반수” 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출석위원 “과반수” 를 “ 3분의 2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(생 략)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의원과 거창군내 각 사회단체 대표 중 의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이 전체위원의 <u>3분의 1</u>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 ③ (생 략)	제5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<u>과반수</u>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<u>과반수</u>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② (생 략) ③ (생 략)	제7조(회의) ① ----- ----- <u>3분의 2</u>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